통보

본 통보문은 10.6조항에 따라 회람한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**1.** | **통보국가:** 인도네시아  **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 항):** |
| **2.** | **담당기관(Agency responsible):**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(FDA)  **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, 고지에 관련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담당기관 이름과 주소(가능한 경우, 전화 및 팩스 번호,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)를 표시해야 한다:**  협력홍보국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(FDA)  주소: Jl. Percetakan Negara No.23  Jakarta 10560 – Indonesia  전화: +(62-21) 42875379  팩스: +(62-21) 42875379  이메일: [kerjasama@pom.go.id](mailto:kerjasama@pom.go.id)  웹사이트: <http://www.pom.go.id> 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시행체계국  인도네시아공화국 국가표준화기관(BSN)  인도네시아 TBT WTO 통보 및 질의처  주소: Gedung 2 Laboratorium SNSU BSN, Komplek Puspiptek, Muncul, Tangerang Selatan, Banten 15314  이메일: [tbt.indonesia@bsn.go.id](mailto:tbt.indonesia@bsn.go.id) 및 [tbt.indonesia@gmail.com](mailto:tbt.indonesia@gmail.com)  웹사이트: <http://www.bsn.go.id> |
| **3.** | **조항 2.9.2 [****X],** **2.10.1 [****],** **5.6.2 [****],** **5.7.1 [****], 3.2 [****], 7.2 [****], 기타에 근거해 통보****:** |
| **4.** | **해당제품(해당할 경우 HS또는 CCCN 번호,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율 제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** 의약품 재료, 전통 의약품 재료, 화장품 재료, 건강보조식품 재료, 식품 재료 |
| **5.** | **제목 (페이지수, 언어):**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되는 의약품 및 식품 재료와 중소산업을 위해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되는 전통 의약품 재료, 의약외품 재료, 화장품 재료 및 식품 재료 형태의 의약품 및 식품 수입 제한 목록에 관한 2022년 인도네시아 FDA 청장 법령 제246호 (174 페이지, 인도네시아어) |
| **6.** | **내용:**   1. 본 법령은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되는 의약품 및 식품 재료 수입 감독에 관한 2022년 인도네시아 FDA 규정 제26호의 시행규정이다. 2. 통일분류체계(HS) 코드에 따른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되는 의약품 및 식품 재료와 중소산업을 위해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되는 전통 의약품 재료, 의약외품 재료, 화장품 재료 및 식품 재료 형태의 의약품 및 식품 수입 제한 목록.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 재료 수입은 국경수입신고서 및 사후국경수입신고서 제도를 통해 인도네시아 FDA의 감독을 받는다. 3. 또한 본 법령은 사후국경수입신고서 제도를 통한 프로필렌 글리콜,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부틸렌 글리콜, 수소화 전분 가수분해물 등과 같은 기타 의약품 등급 용제의 수입을 다룬다. |
| **7.** | **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적과 근거:** 인도네시아 영토로 유입되는 의약품 및 식품 재료 수입 지침;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의 보호 |
| **8.** | **관련 문서:**   1. 의약품식품관리청에 관한 2017년 대통령 규정 제80호(2017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국가관보 제180호) 2.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의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2020년 인도네시아 FDA 규정 제21호(2022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국가관보 제629호) 개정사항에 대한 2022년 인도네시아 FDA 규정 제13호를 통해 개정된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의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2020년 인도네시아 FDA 규정 제21호(2020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국가관보 제1002호) 3.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 산하 기술구현단위의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2020년 인도네시아 FDA 규정 제22호(2022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국가관보 제1111호) 제2차 개정사항에 대한 2022년 인도네시아 FDA 규정 제24호를 통해 개정된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 산하 기술구현단위의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2020년 인도네시아 FDA 규정 제22호(2020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국가관보 제1003호) 4.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되는 의약품 및 식품 재료 수입 감독에 관한 2022년 인도네시아 FDA 규정 제26호(2022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국가관보 제1153호) |
| **9.** | **채택 예정일:**2022-11-14  **시행 예정일:** 2022-12-14 |
| **10.** | **의견 마감일:** 통보일로부터 60일 |
| **11.** | **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: 국가 질의처 [****] 또는 주소, 전화와 팩스 번호, 그리고 이메일과 웹사이트 주소, 해당할 경우, 다른 기관:**  <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3/TBT/IDN/23_09449_00_x.pdf> |